

예산총칙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79,123,114	14,373,693
일반회계	421,990,582	12,659,717
특별회계	57,132,532	1,713,976
공기업특별회계	9,019,933	270,59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019,933	270,598
기타특별회계	48,112,599	1,443,37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73,442	38,203
자활기금특별회계	2,016,916	60,507
수질개선특별회계	41,092,384	1,232,77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3,403	1,002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841,016	55,230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66,893	8,007
기반시설특별회계	441,909	13,257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55,851	10,676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790,785	23,72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 :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679,74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무활동경비
3.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4.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